**호치민 한인회 정관 (회칙)**

**(제15대 호치민 한인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호치민 한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은 본회의 설립 목적을 천명하고 본회의 원활한 운영,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호치민 한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IN HO CHI MINH CITY**”로 한다.

**제 3 조 (설립 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국시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간 본연의 최대가치인 인류애에 기초한 평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지지, 동조하고 이를 구현할 의지를 가진 베트남 호치민 시 대한민국 총 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가족에게 국제시민으로서의 문화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가족의 단합과 친목 증진 및 권익보호를 도우며 또한 주재국 국민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증진하고 문화 교류 등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을 이루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실행하는 데 본회의 설립목적을 둔다.

**제 4 조 (업무)**

1. 베트남 호치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 가족의 단합과 권익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안정된 베트남 정착을 위한 안내, 상담, 중재 및 대정부건의와 문화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주요업무로 한다.
2. 주재국 시민과 지역사회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자선활동 등 행사를 가진다.
3. 주재한인의 활동홍보와 주재국 관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한다.
4. 기타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을 한다.

**제 5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호치민시에 위치한다. 단 사무실의 위치를 본 조와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가진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인 자로서 적법한 여권을 소지한 자
2. 베트남 호치민시 대한민국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 7 조 (권리)**

회원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 후원하는 문화 및 봉사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회가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3. 본회가 주최, 후원하는 대한민국 또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에 가입한 가맹점에서 가맹점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5. 본회의 문화센터 및 한인회관을 이사회 결정사항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6. 한인회 홍보용 이메일링, Web Site, App 서비스 제공 등을 요청하는 권리
7. 한인사회의 화합 및 발전을 위한 행사 또는 사업의 제안 및 주관의 권리
8.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선출직 임원을 선거할 권리 및 총회에 참석해 의결할 권리

**제 8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본회의 활동목적을 지지할 의무
2.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본회의 회원으로서 신청을 하고, 신청 당시 표시한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본회에 고지할 의무
4. 본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

**제 9 조 (금지행위)**

본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회의 이익을 해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해가 되는 행위
3. 본회의 존립을 해하는 행위

**제 3 장 총회**

**제 10 조 (총회의 역할 및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 기구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당해 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의 집행결과 보고
2. 회장의 해임
3. 본회의 임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보고
4. 운영위원회, 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의 활동과 임직원의 변동 사항 보고
5.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의 보고
6.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7. 정관(회칙) 및 선거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8.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
9. 기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의장이 제출한 안건의 검토 또는 의결

**제 11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 회장이 불출석, 부재 등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부회장, 부회장(연령순)의 순서로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회의의 진행은 임원 중 선임된 자가 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회하는 것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 또는 회장을 대신하여 총회를 주재할 권한을 가지는 자가 이를 소집한다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6. “회원” 150인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
7. 위 각호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러한 요청을 본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소식지 등 제반 방법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8. 나.다 호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이나 “회원”의 요청이 있음에도 회장이 이를 알리지 않고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 중 1인이 회장을 대신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 요구를 알리고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9. 총회의 의장은 회의 개최일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다룰 사안과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한인회의 소식지 및 한인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회원들의 e-mail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등)**

1. 총회의 성립은 등록된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이 필요하거나 선거의 경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회장의 해임의 건은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13 조 (이사회 구성 및 역할과 기능)**

1. 이사회는 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의결기구이다.
2. 이사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회장 및 당연직 이사인 임원진, 자문위원 및 외부 위촉 이사를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겸임한다. 회장이 불출석, 부재 등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부회장, 부회장(연령순)의 순서로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4.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5. 한인 회비에 대한 결정
6.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7.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8.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 및 위임할 사항의 결정
9. 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선거 관리 규정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10. 기타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14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장이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최 예정일 일주일 전에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보하고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3.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5.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임 원**

**제 15 조 (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임원
2. 회장 1인 및 20인 이내의 임원을 둘 수 있다.
3. 총영사는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
4.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5.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6. 고문 및 자문위원
7.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총 20인 이하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장의 자격 및 선출 방법)**

1. 주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에서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자
2. 대한민국 법률과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사실증명원에 이상이 없는 자
3. 호치민 한인회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합니다)에 따른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회장의 피선거권 및 회장의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총회에서 통과된 별도의 선거 관리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단 이 규정은 16대 한인회 회장 선거에서부터 적용한다.
2. 회장의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인 회장 또는 수석 부회장은 그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이사회는 당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정하고, 동 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신임 회장의 선출 없이 수석 부회장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석 부회장 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가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전쟁,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장 선거 지연시에는 현회장이 신임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유지한다.
4. 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8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및 이를 주재할 권한을 갖는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 처리한다.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을 가진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4.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각 고문, 자문위원, 명예회장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감사: 본회의 사업과 예산 집행에 대하여 감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6. 회장은 본회 임원이 자신이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의 참석 의무 및 임원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회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으며, 본회를 비방하는 등 본회의 존재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자의 직무를 중지 및 해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직무 중지를 당한 임원은 당해 임원의 참가 권한이 있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

**제 19 조 (운영위원회, 지역별 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의 설치)**

본회는 각 역할별 운영위원회, 지역별 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를 열어 이에 대한 결의를 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각 운영위원회, 지역별 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0 조 (운영위원회, 지역별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장의 임명)**

회장은 각 역할별 운영위원회, 지역별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의 장을 임명할 수 있다. 산하조직의 장은 자체 단체를 조직하고 필요한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지역별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의 장의 임명 및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식지, 한인회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회원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 7 장 한인회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

**제 21 조 (협력 단체)**

1. 한인사회에서 특수목적을 위해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를 한인회는 이를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로 두어 한인회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2. 한인회는 한인회의 필요시에 특수목적을 위한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설립할 수 있다.

**제 22 조 (한인회의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 관계 설정 등)**

1.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의 장은 한인사회의 단결과 화합,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본 정신 하에 본회의 회장과 협의하여 상호 관계 및 활동 범위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의 장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본회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문위원 또는 고문이 된다.
3. 협력단체(공공협력기관 포함)의 장의 임기만료 혹은 해임 시 한인회 자문위원 또는 고문직도 자동 해제한 것으로 한다.

**제 8 장 징계 및 표창**

**제 23 조 (징계사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본 정관 제9조(금지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본회의 회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
2. 본 정관 제8조(의무)에서 규정된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
3.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제 24 조 (징계의 종류)**

1.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과 징계 처분을 대상자에게 행할 수 있다.
2. 서면 경고 또는 형사 고발, 고소
3. 회원 자격의 정지
4. 제명
5. 전항에 따른 회원 자격의 정지는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6. 본 조에 따른 제명 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본회에 재 가입할 수 없다.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

**제 25 조 (징계의 절차)**

1. 회장은 본회의 회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지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 적정한 징계 처분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사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5인의 이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의 유무 및 종류에 대한 의결을 이사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3. 전항에 따른 회장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회원은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전체 이사회에 재심 요청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 심의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재심 과정에서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회장은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 26 조 (포상)**

1. 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한인사회 및 주재국 현지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회장은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 9 장 재정 및 자산**

**제 27 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의견을 득한 후, 감사의견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계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승인하고, 승인한 보고서가 한인회 소식지 및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수입)**

본회는 다음을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기부금
3.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의 수익금

**제 29 조 (자산의 명의)**

본회의 모든 자산은 한인회 명의로 한다.

**제 30 조 (부채에 대한 책임 및 자산의 인수)**

1. 신임회장은 취임 시, 전임회장 퇴임 시점에 결산한 본회의 모든 자산 (금전 및 물적 자산)을 인수한다.
2. 전임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및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10 장 관리**

**제 31 조 (서류의 관리)**

1. 회장은 정관, 규정, 자산 목록, 각 종의 계약서, 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무국에 보관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이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32 조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회장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예산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장 사무국**

**제 33 조 (사무국의 설치)**

본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34 조 (사무국의 운영)**

1.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는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장을 포함한 본 회의 임원들의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3. 사무국직원의 급여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정한다.
4. 사무국 직원들은 본회의 수입 지출에 관련한 내역을 그 증빙과 함께 명확히 기장하여야 하며, 아울러 본회의 자산의 관리를 위한 자산 관리 대장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5. 회장은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제 12 장 정관의 효력**

**제 35 조 (정관의 효력)**

본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부칙:

1. 본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호치민 한인회 정관(회칙)**

\* 본 정관(회칙)은 2006. 9. 21일 제2차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로 승인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구 정관에 의한 2006. 12. 22일 총회 승인으로 확정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제13조 4항, 제17조, 제20조 6항, 제25조 8항, 제30조 2항,

제33조, 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2007. 1. 25일 제3차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로 개정보완 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2007. 7. 10일 제12조 3항. 제16조 1항. 제7장. 제23조. 제24조.제25조. 의 수정보완 및 제17조. 제18조. 2개조항의 신설을 제4차 정기 이사회

심의 의결로 개정 보완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2007. 12. 5일 제8조(2항 신설) 제21조. 제32조. 의 개정 및 부칙 “공정 선거 관리 위원회” 설치 및 활동규정 신설 정관 첨부를 제5차 정기 이사회심의 의결로 확정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2008. 3.7일 제1차 이사회 심의 의결로 제5장 19조가 수정 보완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2008. 5.23일 제2차 이사회 심의 의결로 제6조가 수정 보완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2009. 8.25일 제 3차 이사회 심의 의결로 제15조 본문수정 및 1항 삭제, 제12조 본문수정 및 삭제된 제15조 1항을 제12조 7항에 추가, 부칙 2항 호치민 한인회장 선거관리규정 전면 개정을 수정 보완된 정관임.

\* 본 정관(회칙)은 2012. 2.13일 제1차 이사회 심의 의결로 전면 개정하고, 2012년 4월19일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됨.

\* 본 정관(회칙)은 2014.3.28.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됨.

\* 본 정관(회칙)은 2021.00.00.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됨.